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 4. 25 선고 2022가단10918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음과마음 담당변호사 이석화

피 고 A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23. 4. 11.

판 결 선 고 2023. 4. 25.

주 문

1. 피고가 2022. 7. 14.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와 2022. 7. 14. 접수 제4439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정리촉진과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채권자이고, 피고는 참가인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고 그 등기를 마친 자이다.

나. 원고는 참가인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01619호로 양수금 청구를 하여 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시효연장을 위하여 대구지방법원 2021차전13397호 양수금 지급명령을 청구하였으며, 그 사건의 확정으로 금 153,925,776원 및 그 중 58,522,583원에 대하여 2011. 5. 13.부터 같은 해 7. 22.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2018. 8. 31.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2022. 7. 13.을 기준으로 참가인에게 금 267,758,312원의 채권이 있다.

다. 참가인의 유일한 재산 및 채무초과 상태

참가인은 2003년 이후로 영업활동을 한 적이 없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데,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의 합계금은 276,501,400원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채권자들이 압류, 가압류를 한 상태인데, 구체적으로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금 267,758,312원, 소외 C에 대한 2007. 5. 18.자 기준 6,730,280원의 가압류채무, 소외 주식회사 D에 대한 2008. 10. 10.자 기준 63,619,734원의 가압류채무, 소외 대한민국 및 소외 포항시 남구청에 대한 액수 미상의 체납세액, 피고에 대한 2022. 7. 14.자 기준 1,040,109,296원의 원리금 채권 등이 있다.

라.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피고는 2022. 7. 7. 참가인의 감사로 취임한 이후 2022. 7. 14. 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00,000,000원, 채무자 참가인, 채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와 2022. 7. 14. 접수 제4439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3. 26. E유한회사의 채권회수수임인으로서 청구금액 135,813,679원으로 하여 이 법원 2002카단2077호로 가압류등기를 마쳤으나, 3년이 경과하도록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22. 10. 20.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바. 피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630,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참가인의 소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아, F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차2271호로 ‘331,911,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위 지급명령이 2015. 10. 3. 확정되었다. 그러나 F은 2010년경 부도이후 2012. 12. 31. 이미 폐업하였고, 피고는 참가인에게 채권의 원상회복을 통지하였다. 피고는 2022. 7. 14. 당시 참가인에 대하여 1,040,109,296원의 원리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잠실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참가인은 이 사건 부동산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초과상태임이 넉넉히 인정되는 점, ②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참가인에 대한 기존 채무일 뿐, 참가인의 갹생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차용행위와 더불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와 참가인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참가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의 어느 한 사람인 피고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이고 이는 다른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이며 민법 제406조 소정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채무자인 참가인이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채권자로서 민법 제406조 소정의 채권자취소권이 있고, 그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실제로 채권이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사해행위에 의해

마쳐진 것이 아니고, 원고는 참가인의 대표이사인 G의 개인재산에 대하여도 가압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부동산이 아니며,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당시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3) 그러나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참가인에 대한 채권자라 하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원고가 다른 자산에 가압류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채권에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가 2022. 7. 14. 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숙

별지